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02
----------	-----

2020. 9. 16.(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 기 창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8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9월 4일

-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기창 의원)

가. 제안이유

- 교통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충청북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 및 안전교육, 운행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교통안전법」 제3조 제1항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및 6조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 및 안전교육, 운행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안 제8조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8. 11.~'20. 8. 2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용”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인천, 울산 등 6개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은 이용의 편리성으로 확대되고 있고, 교통사고 증가로 안전에 대한 위협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 및 안전사고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의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충청북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및 기준 마련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용자 등 충청북도민, 관련 기관 및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안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첨부제외 관련규정

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첨부제외 사유

- 안 제5조에 의한 사업 추진은 권고적 규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고,
- 안 제6조에 및 제7조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구역 지정·운영 등과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현황 자료 등이 부족하여 예상비용 산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나, 유사시책 사업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금액기준(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장 이혜옥